

서 면 답 변 서

질문의원	조 경 래 의원	질문 일시	'97. 7. 2.
질문장소	총무보사상임위	질문대상자	총 무 국 장
제 목	파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		

[질문요지]

- 1.주내자육원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복지관 운영을 희망하는 이유는?
- 2.관리 위탁법인인 주내자육원이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책은?
- 3.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시비 부담 대책은?
- 4.복지관 개관시 장애인의 이용률 및 지원 효과는 ?

[답변내용]

- 1.주내자육원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복지관 운영을 희망하는 이유는?

○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은 1958년 4월 23일 설립된 이래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인 주내자육원과 중증(1급)장애인 수용시설인 주내요양원, 장애인 아동교육을 위한 교육청 소관의 새얼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음

○ 앞으로도 주내자육원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이지역을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

2. 관리 위탁법인인 주내자육원이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책은?

-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은 시·도지사가 직접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
- 주내자육원의 위탁 포기시에는 관내 사회복지법인, 종교법인 등에 관리를 위탁하여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
- 복지관의 종사원중 관장을 제외하고는 관리 위탁법인과 별도로 고용된 공공기관 직원으로 복지관 업무를 위탁법인 변경과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업무 추진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3.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시비 부담 대책은?

-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보조금 기본보조율에 의하여 국비 40%, 지방비 60%로 규정되어 있으며
- 도비 및 시비 부담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100% 도비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음
- 따라서 시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내무부에서 관련규칙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하게 되어있으며
-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시비 부담시에는 장애인 복지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시비 부담이 불가피 한 실정임

4.복지관 개관시 장애인의 이용률 및 지원 효과는 ?

- 파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'97. 3월말 현재 1,884명이며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7,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산업화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증가 되는 추세에 있음
- 경기도 장애인정책 우선 순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증대 27.5%, 장애인생계보조 19.6%,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확충이 19.6%, 기타 편의시설 설치등 33.3%를 차지하고 있어
- 시승격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필요함
- '91년도에 설립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'95년도에는 연 560명 정도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도 장애종별 분관 설치, 초·중·고 특수학교 학급증설을 계획하고 있음
- 파주시 복지관 개관 초기에는 재가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점차 이용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됨